



의안번호

제105호

논산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

발 의 자	김진호 의원 외 5명
발의연월일	2017. 11. 17.

논산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 안 호	제105호
---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11. 17.

대표발의자 : 김진호

공동발의자 : 이충렬, 박승용,
임종진, 이계천,
민병춘

1. 제안이유

-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봉사활동을 통하여 사회에 공헌하는 해병전우회의 활동에 대한 지원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원활하고 효과적인 활동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해병전우회의 주요활동 내용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)
- 다. 해병전우회 지원에 따른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 참조

나. 예산조치 : 관련부서 검토사항

다. 기타사항

- (1) 입법예고 : 「논산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로 주민의견 수렴
- (2) 예고기간 : 2017. 11. 22. ~ 11. 26.(5일간)
- (3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.

□ 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논산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사회 일반의 이익에 기여하고 주민을 위한 재난 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해병전우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해병전우회”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논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사무소를 두고 결성한 조직체로서 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주요활동 및 보조금 지원 등) ① 해병전우회의 주요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계도 활동
2. 야간방범 순찰 활동
3. 수상 안전사고 예방 활동
4.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
5. 그 밖에 시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활동

② 논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해병전우회의 원활한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

1.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
2. 해병전우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
3. 그 밖에 시장이 해병전우회 활동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4조(지도 및 감독)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해병전우회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에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.

제5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「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성 명
입 안 자	논산시의회 의원 김 진 호 의원 등 6인

참고 1

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·단체에 기부·보조,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 <개정 2014.5.28.>

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2. 국고 보조 재원(財源)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3.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
4.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“공공기관”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 <개정 2014.5.28.>

1.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
2.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

□ 「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

제4조(보조대상 사업) 논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「지방재정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2.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3.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,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5조(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)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금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.

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자치부가 정한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에 따른다.

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논산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참고 2 | 논산시 해병전우회 운영 현황

□ 회원 현황

(2017. 11 1.현재)

계	회 장	부회장	기타 간부 (총무 등)	회 원	비 고
85명	1	3	9	72	

□ 임무 및 2017년도 활동내역

○ 임 무

- 주요교차로 및 학교앞 차량통제 및 교통봉사
- 지역내 우범지역 방범순찰활동 및 청소년 선도
- 학교폭력 단속활동 참여
- 오물제거, 폐품수집 및 재활용 캠페인 등 환경정화봉사활동
- 유원지 안전사전 예방 및 수상 인명구조 등 재난구조봉사활동

○ 2017년도 활동내역

- 명절 전후, 축제기간 및 기타 행사시 교통봉사활동 : 8회
-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참여 : 1회
- 연합회 환경정화활동 : 2회
- 인명구조훈련 및 수변안전활동 : 5회
- 수해복구지원 : 1회
- 월 정기 방범활동 : 10회

□ 2017년도 시 보조금 지원현황

사 업 명	사업량	지원액	비 고
물놀이 안전지도 및 인명구조 활동 (장비구입)	1식	5,000천원	안전총괄과